

(재)전북테크노파크 공고 제 2025 - 64호

- 2025 데이터기반 서비스기술 기업 창업지원사업 -

# 「2025 데이터기반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」

## 참여기업 모집 공고

전북특별자치도와 (재)전북테크노파크는 도내 데이터기반 기술창업기업의 투자유치 기반 압축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2025년 「데이터기반 기술창업기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진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5. 03. 24.

전북특별자치도지사

(재)전북테크노파크원장

### 1. 사업개요

- **사업목적:** 전북도내 기업의 서비스 및 투자유치 기반 압축성장을 지원하고, 지역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기여
- **사업내용:** 데이터 기반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제작 및 마케팅, 컨설팅, 투자유치 IR 등 특화 지원
- **사업기간:** 협약체결일로부터 2025년 10월 30일까지(\* 사업기간은 조정될 수 있음)

### 2. 지원대상

공고일 기준 전북 소재(본사, 공장, 연구소)의 창업 7년 이내의  
데이터 기반 제조기업\*

\*기업 제품 또는 서비스에 데이터 기반 기술을 활용하는 기업

\*\*해외투자유치 가능성이 높은 기업에 대해 가점 부여 (증빙제출 必)

- **지원규모:** 6개사 /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(기업부담금 및 VAT 제외)

### 3. 지원내용

- ① 기술 상용화 자금 지원 -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한도 내에서 자율선택
  - 3개 프로그램 총지원금액의 합이 20백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  - 프로그램별 지원금의 10%이상 자부담 필요 (VAT 별도)
- ② 비즈니스 컨설팅 지원 (기술 상용화 자금 선정시 필수 지원으로 별도지원 불가)
- ③ 투자유치 IR 지원 (기술 상용화 자금 선정시 필수 지원으로 별도지원 불가)

연번	프로그램		지원내용	지원금액	비고
①-1	기술 상용화 자금 지원	시제품 제작비	- 테스트 샘플·시금형 제작비 - 기술 개발에 필요한 재료비 및 서비스 개발·상용화 관련 제작비	최대 20,000천원	- VAT 별도  - 항목별 민간 부담금 (현금) 10% 이상
①-2		마케팅 지원	- 제품 및 기업 홍보 동영상 제작, 홈페이지 신규 제작, 카탈로그, 브로슈어, BI·CI 개발 등	최대 5,000천원	
①-3		기타 지원	- 상기 분야 외 기술 상용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	최대 5,000천원	
②	비즈니스 컨설팅 지원		< 기술상용자금지원 선정시 자동 선정 지원 > - 지원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전문가 컨설팅 지원		
③	투자유치 IR 지원		< 기술상용자금지원 선정시 자동 선정 지원 > - 투자유치 위한 Pin-Point 투자 IR 밀착 지원 - IR 자료 작성 지원 및 고도화 제작 - 투자유치 역량강화 컨설팅 및 지원 등		

\*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은 조정될 수 있음

#### □ 총사업비 산출 방법

- ① 시제품 제작비 지원금 15,000천원 + 마케팅 지원금 5,000천원 신청시
  - 총지원금 20,000천원 + 기업부담금 2,000천원 = 22,000천원(VAT 별도)
- ※ 지원금 신청시 기업은 총사업비 및 부가세 합산 금액(24,200천원) 지출 증빙 필요

## 4. 추진절차



\* 내부 사정에 따라 상기 일정 및 방식은 변경될 수 있음

## 5. 제출방법

□ **공고기간:** 2025. 3. 24.(월) ~ 4. 18.(금) 17:00까지

- 전북테크노파크(www.jbtp.or.kr) 홈페이지 사업공고
- ※ 각 홈페이지 첨부파일 통해 사업신청서 및 관련양식 교부

□ **접수기간:** 2025. 3. 24.(월) ~ 4. 18.(금) 17:00까지

□ **접수처:** 이메일 접수 (hyshin@jbtp.or.kr)

※ 이메일 접수 후 공고기간 내 유선으로 접수 확인 요망

□ **제출서류**

연번	제출서류	비고
1	[붙임] 사업 신청서	필수
2	사업자등록증 (기업부설연구소 인증서 또는 공장등록증 등)	필수
3	자금지원 산출 견적서(세부원가내역서)	필수
4	[별첨1]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	필수
5	[별첨2]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	필수
6	[별첨3] 청렴이행각서	필수
7	최근 2개년(2023~2024년) 재무제표 각 1부 * (유의사항) 관련 규정 근거 최근 결산기준 자본전액잠식일 경우 지원제외	필수
8	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각 1부	필수
9	4대보험 가입자명부 또는 고용보험가입자 명부	필수
10	(기타) 기업 역량 자료, 해외투자 유치 관련 자료(이메일 등) 등	선택

### [공통사항]

1. 제출서류 PDF 변환시, 반드시 기본인쇄(1페이지 1쪽)로 설정 요망(1페이지 2쪽 변환 불허)
2. 모든 제출서류는 공고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분에 한하며, 보완이 필요한 경우 서류 제출이 재요청될 수 있음
3. 제출서류의 미비, 착오 등에 의한 불이익 책임은 신청기업에게 있음

□ **문의처:** 전북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지역균형사업팀

(Tel.) 063-219-2127 / (E-Mail) hyshin@jbtp.or.kr

## 6. 선정절차 및 평가기준

### □ 선정절차

- 서류 적정성 평가 → 발표평가 → 참여기업 선정 및 협약

### □ 평가방법

- 평가방법: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발표평가
- 발표시간: 20분 내외(발표시간 10분, 질의응답 10분 내외)
- 선정기준: 평가위원 점수의 합산평균 70점 이상 신청기관(기업) 중 고득점순 선정
  - ※ 평가점수를 계산한 결과,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
- 평가항목

평가항목	평가지표	배점
사업계획의 적정성	- 세부 추진 전략 및 일정의 적정성과 실현 가능성 - 사업기간 내 과업 달성 여부, 신청금액의 적정성	15
	- 사업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	15
기업 비전 및 사업성	- 기업 비전과 목표의 적절성 및 성장 가능성	10
	- 기업 보유 역량(수출, 보유기술, 제품 등) 우수성 등	15
지원의 효과성	- 지원을 통한 기대효과(매출, 고용, 성장가능성 등) - 기술 및 제품의 경쟁력 제고	20
투자가능성	- 투자유치 현황 및 가능성 - 투자 자금 조달 능력 및 계획 - 경쟁사 분석 및 투자유치 지원 필요성 등	20
	- 해외투자유치 진행 중인 경우 가점 (증빙 제출시)	5
<b>총 점</b>		<b>100</b>

※ 평가항목 및 기준은 일부 조정될 수 있음

## 7. 기타 유의사항

### □ 지원 제외 대상

지원제외 사항
<p>다음 각 호의 사항 중 1개 이상에 해당할 경우 <b>지원제외 대상</b>으로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기업의 부도</li> <li>2.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</li> <li>3.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었거나,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</li> <li>4. 파산, 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(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)</li> <li>5. 최근 결산 기준 완전자본잠식</li> <li>6. 외부감사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감사의견이 "의견거절" 또는 "부적정"</li> <li>7.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(과제 목표와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) 국가·지방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</li> <li>8. 보조사업 수행 등의 배제 결정을 받은 참여기관, 대표자 및 책임자, 또는 보조금 수급의 제한을 받은 보조금 수령자</li> <li>9. 신청일 현재 국가연구개발(또는 지원)사업에 참여제한 조치 중인 기업(대표) 및 사업 책임자</li> <li>10. 신청일 현재 사업자가 지원사업에 따라 발생한 정산반납 대상액(지원사업 정산결과에 따라 사업자가 기관에 납부하여야하는 금액) 및 기술료를 체납(매출조사 거부, 회피 등 포함)하고 있는 경우</li> <li>11. 신청일 현재 기업의 재무제표/신용도 평가 상의 이유로 이행보증증권(계약/선금/중도금/잔금 등)의 발행이 불가능한 경우</li> <li>12. 신청일 현재 사업자, 과제참여인력, 대표권자, 업무집행권자 및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자가 「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」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경우</li> <li>13. 타인의 작품을 모방하거나 타인의 저작권을 무단으로 사용한 경우</li> </ol> <p>* 허위사실 확인 시 선정취소 및 지원금 전액 환수 조치, 향후 사업 관련 제재 조치함</p>

\*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 27조(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)와 관련하여 접수 마감일 현재 참여제한 적용을 받고 있는 기관(기업), 대표자는 과제 신청이 불가함

#### ○ 과제선정 및 확정 이후라도 아래사항 발생 시 과제선정 취소 가능

- 주관기관이 민간부담금 확보 등의 약속사항을 불이행한 경우
- 타기관의 IPR(지식재산권)에 저촉되어 과제수행이 불가능한 경우
- 사업여건 변동으로 사업 수행이 불필요하거나 곤란한 경우
- 동일(유사)과제에 대해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받고 있는 기업
-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(각종 보고서 제출, 기술료 납부, 정산금 납부 등)을 불이행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경우
-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### □ 부정청구에 대한 제재

「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」 시행(2020.1.5.)에 따라 각종 공공재정에서 제공되는 보조금·보상금·출연금 등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고 제공되는 금품(이해 “공공재정지급금” 이라 함)을 허위 또는 과다 청구하거나 원래의 사용 목적과 다르게 사용된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이 부과됨

#### ※ 제재부가금

- ① 허위청구(청구할 자격이 없음에도 지원금 등을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지원금의 5배
- ② 과다청구(받아야 할 지원금 등 보다 초과 청구하여 받은 경우) : (받은 지원금 - 원래 받아야 하는 지원금)의 3배
- ③ 목적외 사용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와 달리 사용한 경우) : (정해진 목적이나 용도 외 달리 사용한 지원금)의 2배